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조직은행이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의 위탁기관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나목4)가)(1) 중 “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”를 “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, 「약사법」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1. 시설 및 장비 기준 가. (생 략) 나. 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장 비 등 세부 기준 1) ~ 3) (생 략) 4) 진단검사의학실 가) (생 략) (1)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 검사(NAT, Nucleic a cid Amplification Tes t): 핵산증폭검사를 실 시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, 「대 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지정 · 고시하 는 기관 (2) (생 략)	1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1) ~ 3) (현행과 같음) 4) ----- 가) (현행과 같음) (1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대 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, 「약사법」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백신안 전기술지원센터----- ----- --- (2) (현행과 같음)